

瑞山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4. 9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4. 9

라. 上程日字 : 1999. 4. 14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上下水道事業所長 金亨來)**

**가. 提案理由**

하수도사용요금의 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인상하며,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7조).
-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1일 발생량 산정의 기준을 구체화 함 (안 제15조 제3항).

-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조항을 삭제함.
-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의무의 승계 삭제(안 제20조).
-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사항을 삭제함.
- 권한의 위임사항을 직제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추가 위임함(안 제21조).
- 하수도 사용요금의 조정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3% 인상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업종을 9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통폐합함(안 별표 1).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하수도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율이 처리원가의 56% 수준에 불과하여 금번에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요금을 70% 수준까지 현실화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또한,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시장의 허가사항을 신고로,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조항삭제, 공공 하수도 사용제한 사항삭제등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음.
- 기타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서산시 공고 제99-29('99.2.10)호로 입법예고를 거친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60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 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4. 9.

#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0
----------	----

제출년월일 : 1999 년 4 월 9일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하수도사용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과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시장에 신고토록 함. (안 제7조)
- 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1일 발생량 산정의 기준을 구체화함 (안 제15조 제3항)
- 다.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조항을 삭제함
- 라.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의무의 승계 삭제 (안 제20조)
- 마.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사항을 삭제함.
- 바. 권한의 위임사항을 직제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추가위임함. (안 제21조)
- 사. 하수도 사용요금의 조정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3% 인상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업종을 9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통폐합함. (안 별표 1)

## 3. 참고 관련자료

- 가. 환경부훈령 제380호 ('97. 12. 30)

#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중 “일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신고”로 하고, 동조중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 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점용으로”를 “검용으로”로 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제13조제3항중 “허가신청시”를 “신고신청시”로, “사용허가기간”을 “사용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2목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중 “제2항제1호”를 “제2항 제2호”로 하며 동호2목의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③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관련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관련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 (한국산업규격 KSF1507)에 의한다.

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0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접수(건축허가 및 동지역 15평이상 건축신고분에 한함)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동지역에 한함)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동지역에 한함)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동지역에 한함)
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동지역에 한함)
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동지역에 한함)
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동지역에 한함)
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동지역에 한함)
1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동지역에 한함)
1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동지역에 한함)
1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시장은 읍·면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의 접수 (건축허가분 제외)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신고
5.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③시장은 동지역 15평 미만 건축물신고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의 접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과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기준 제10조 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일시사용허가)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일시사용신고) ----- ----- -----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사용료) ①~②(생략) ③별 제2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외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료) ①~②(현행과 같음)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관련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의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생략) ②(생략) 1.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3(생략)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p>	<p>제11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3(현행과 같음) ③----- ----- 점용으로 ----- ----- -----</p>
<p>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②(생략)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한다. ④~⑤(생략)</p>	<p>제13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신고신청시 ----- ----- ----- 사용신고기간 ----- ----- ④~⑤(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표

문	개
<p>1) (생략)</p> <p>2)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 ·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 수종말처리장시설에 유입 · 처리하는 경우</p> <p>※ <u>하수발생량 산정은 환경부고시 제92-61호('92.10. 9) 한국공 업규격 KSF1507을 참조한다.</u></p> <p>(신설)</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삭제)</p> <p>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달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 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관련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관련 별 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 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 (한국산업규격 KSF1507)에 의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③(생략) ④(생략)</p> <p>제20조(자료제출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권리의 의무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p> <p>제22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삭제)</p> <p>제20조(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별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삭제)</p>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li> <li>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li> <li>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li> </ol>	<p>제21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접수 (건축허가 및 동지역 15명이상 건축신고분에 한함)</li> <li>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동지역에 한함)</li> <li>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동지역에 한함)</li> <li>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li> <li>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li> <li>6.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동지역에 한함)</li> <li>7.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동지역에 한함)</li> <li>8.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동지역에 한함)</li> <li>9.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용료의 징수 (동지역에 한함)</li> <li>10.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li> <li>1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동지역에 한함)</li> <li>1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li> <li>1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동지역에 한함)</li> <li>1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li> </ol> <p>②시장은 읍·면지역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의 접수 (건축허가분 제외)</li> <li>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li> <li>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li> <li>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 신고</li> <li>5.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li> <li>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li> </ol>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규칙에의 위임) (생략)</p>	<p>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8.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p> <p>②시장은 동지역 15명 미만 건축물 신고시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의 접수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p> <p>제22조(규칙에의 위임) (현행 제24조와 같음)</p>

[별표 1]

## 하수도사용요금표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 (원)		
가 정 용	1~10	40		
	11~20	60		
	21~30	80		
	31~40	110		
	41~50	140		
	51이상	190		
업 구 용	1~20	80		
	21~50	100		
	51~100	160		
	101~300	180		
	301이상	210		
영 업 용	1~30	100		
	31~50	150		
	51~100	200		
	101~500	260		
	501이상	360		
육 탕 용	1 종	1~500	220	
		501~700	230	
		701~1000	250	
		1001이상	290	
	2 종	1~200	260	
		201~300	280	
		301~500	330	
		501이상	440	
		산 업 용	1m <sup>3</sup> 당	120

주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물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종별	업명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li> <li>·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li> <li>·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li> <li>·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li> </ul>
업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설소화전</li> <li>·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li> <li>·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li> <li>· 학교</li> <li>· 정당</li> <li>·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li> <li>· 병영</li> <li>· 신문사, 방송국</li> <li>· 한국과학기술단지 연구기관</li> <li>·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li> <li>·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li> <li>·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li> </ul>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점객업, 공연장, 숙박업</li> <li>·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li> <li>· 백화점, 도매센터,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li> <li>·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li> <li>· 음식점</li> <li>· 학원 (도서관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li> <li>· 사진현상소</li> <li>·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다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장장업 제외)</li> <li>·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li> <li>· 발전소</li> <li>· 이 발전소(미장원 포함)</li> <li>· 병원</li> <li>·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li> <li>· 화훼, 식목업</li> </ul>

업종별	업명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li> <li>· 도살장, 정육업</li> <li>·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장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li> <li>·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li> <li>·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li> <li>·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li> <li>·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li> <li>·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제외)</li> <li>·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함)</li> <li>·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li> <li>·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규칙)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 안마시술소</li> </ul>
욕탕용	<p>1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ul> <p>2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li>·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li> <li>·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li> <li>· 법령(의료법,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시설기준(연면적 830㎡이하,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이하)를 초과하거나 시설기준 이외의 휴식시설을 설치한 안마시술소</li> </ul>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li> <li>· 두채 재배업소</li> </ul>

-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산시 공고 제99-29호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 2. 10.

서 산 시 장

## 1. 조 례 명

서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 2. 개정취지

하수도 사용요금 체계개선 및 요금인상과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의거 일부조항을 폐지하고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을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 (안 제7조)

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1일 발생량 산정의 기준을 구체화함 (안 제15조 제3항)

다.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시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조항을 삭제함.

라.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의무의 승계 삭제 (안 제20조)

마. 행정규제폐지 및 정비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의 제한 사항을 삭제함.

바. 권한의 위임사항을 직제개편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추가위임함. (안 제21조)

사. 하수도 사요요금의 조정

하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23% 인상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업종을 9개업종에서 6개업종으로 통폐합함. (안 별표 1)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1999. 3. 1.까지 서산시장(참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455-660-352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